

담양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

「담양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8. 25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규칙명 : 담양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규칙
일괄개정규칙안

2. 제안 이유

- 상위법령 및 담양군 조례와의 명칭 일치를 통해 규칙의 체계성을 확립하기 위해 담양군의회 규칙 내 ‘간사’ 명칭을 ‘부위원장’으로 일괄 정비하여 담양군의회 회의 운영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 내용

가. 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」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
- 제49조(의사일정) 및 제59조(회의록)제3항의 ‘간사’ 명칭 개정
- 군정 질문 요지서 군수 송부 시한 개정
 - (현행) 질문 120시간 전 → (개정) 질문 48시간 전

나. 「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제2조(구성) 및 제5조(발언 및 해명)제3항의 ‘간사’ 명칭 개정

4. 입법 예고 기간 : 2026. 8. 25. ~ 8. 31.(6일간)

5. 의견 제출

-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규칙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

1. 규칙안	담양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
--------	---

관련조문

의견

2. 의견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 소

(전화 :)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담양군의회 의장 귀하

담양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규칙

일괄개정규칙안

제1조(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」의 개정)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 중 “**간사와**”를 “**부위원장과**”로 한다.

제59조제3항 중 “**간사가**”를 “**부위원장이**”로 한다.

제66조의2제4항 중 “**후, 군정질문 120시간**”을 “**후 군정질문 48시간**”으로, “**하고 군수는 군정질문**”을 “**하고, 군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**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**간사**”를 “**부위원장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, 위원장, 부위원장 선임은 「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제3항 중 “**간사와**”를 “**부위원장과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49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<u>간사와</u> 협의하여 정한다.	제49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-- ----- ----- <u>부위원장과</u> ----- --.
제59조(위원회 회의록) ① (생략) ② 삭제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<u>간사가</u> 서명·날인한다.	제59조(위원회 회의록) ①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부위원장</u> 의 -----.
제66조의2(군정에 관한 질문) ① ~ ③ (생략) ④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정 질문 요지서를 미리 접수하여 질문내용이 의원 간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한 <u>후, 군정 질문 120시간</u>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<u>하고</u> 군수는 <u>군정 질문 48시간</u> 전까지 이에 대한 답변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66조의2(군정에 관한 질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<u>후 군정 질문 48시간</u> ----- ----- <u>하고, 군수는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</u> -- ----- -----.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
제2조(「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2조(구성) ①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<u>간사</u>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 <u>부위원장</u> ----- -----.
② <u>위원장, 위원, 간사 선임은 「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른다.</u>	② <u>위원, 위원장, 부위원장 선임은 「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른다.</u>
제5조(발언 및 해명) ①·② (생략)	제5조(발언 및 해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,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위원장은 <u>간사와</u>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위원장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